|  |  |  |
| --- | --- | --- |
| **<선적항 세금환급(면제) 관리방법>**  **발표에 관한 공고**  국가세무총국 공고 2014년 제52호  <재정부, 해관총서, 국가세무총국 선적항 세금환급정책 시범범위 확대에 관한 통지>(재세 [2014] 53호)에 근거하여, 조정 된 <선적항 세금환급(면제) 관리방법>을 공고하며 2014년 9월 1일(수출화물신고서[수출세금환급전용]에 기록된 수출일자 기준)부터 집행을 개시한다. 기존의 <선적항 세금환급(면제) 관리방법>(국가세무총국 공고 2012년 제44호)은 동시에 폐지한다.  이를 특별히 공고한다.  국가세무총국  2014년 8월 28일  **선적항 세금환급(면제) 관리방법**  **제1장 세금환급(면제) 등록**  **제1조** 수출기업이 선적항 세금환급(면제) 정책을 적용하는 경우 아래의 조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한다.  (1) 기존에 수출세금환급(면제) 자격인정을 받아 자영으로 수출화물을 운영하는 증치세 일반납세인  (2) 납세신용등급이 세무기관에 의해 B급 및 그 이상으로 평가되고, 수출세금환급의 심사관심정보 중 관심기업 등급이 1-3급에 해당되지 아니한 수출기업  (3) 해관이 B류 및 그 이상으로 관리를 실행하는 수출기업(해관이 제공한 “선적항표식”이 있는 수출화물신고서 전자정보에 준한다).  **제2조** 수출기업의 선적항 세금환급(면제) 등록방식은 수출기업이 세금환급(면제)를 신고할 때에 세무기관이 수출세금환급 심사시스템에서 자동으로 확인하는 것이다. 세무기관이 해관 제공 “선적항표식”이 있는 수출화물신고서 전자정보를 읽을 때 수출세금환급 심사시스템이 수출기업의 “기업대마” 항목에 자동으로 “선적항 세금환급” 표식 처리한다.  **제2장 운송기업 및 운송수단 확정**  **제3조** 선적항 세금환급(면제) 정책의 적용조건에 부합되는 운송기업 및 운송수단은 그 소재지의 성급 국가세무국이 현지 재정, 해관 등 부문과 협동하여 확정한다.  **제4조** 성급 국가세무총국은 본 공고가 발표된 후 선적항 세금환급(면제) 정책의 적용조건에 부합된다고 인정하는 운송기업 및 운송수단 명단을 국가세무총국에 보고하고, 그 다음으로 본 지역에서 신설되고 조정을 거쳐 조건에 부합되는 운송기업 및 운송수단 명단을 매년 6월 말과 12월 말에 국가세무총국에 보고한다. 국가세무총국이 종합하여 발표한다. 명단을 보고하는 양식은 첨부자료를 참조한다.  **제3장 세금환급(면제) 신고**  **제5조** 수출기업이 자영으로 선적항 세금환급(면제) 정책이 적용되는 화물을 수출할 때, 선적지해관에서 발급한 수출화물신고서(수출세금환급전용)(이하 ‘세금환급증명연’)을 가지고 현행 수출화물노무 세금환급(면제) 규정에 따라 세무기관에 수출세금환급(면제)를 신고하여 처리한다.  **제6조** 수출기업이 선적항 세금환급(면제)를 신고할 때, 신고한 명세표의 “세금환급(면제) 업무유형”란 내 “QY” 표식을 기입해야 한다. 대외무역기업은 단독관련번호로 선적항 세금환급 정책이 적용되는 수출화물 세금환급을 신고해야 한다.  **제7조** 선적항 세금환급(면제) 정책이 적용되는 수출화물 세금환급율의 집행시간은 선적지 해관이 발급한 세금환급증명연에 기록된 “수출일자”에 준한다.  **제8조** 수출기업의 기타신고 수출환급(면제) 요구는 현행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제4장 세금환급(면제) 심사**  **제9조** 각 지역의 세무기관은 현행 전자전송시스템 수출세금환급 서브시스템의 관리규정에 따라, 지체없이 세무총국이 전달한 해관의 “선적항표식”이 있는 신고서 데이터를 다운로드하고 숙지한다.  (1) 선적지 해관에서 발급한 세금환급증명연의 신고서 데이터(이하 ‘선적데이터’).  (2) 정상적으로 통관 및 정산 완료된 신고서 데이터(이하 ‘정상통관완료 데이터’).  (3) 실제 수출항에 도착하지 못한 화물의 신고서 데이터(이하 ‘미도달데이터’).  (4) 화물이 수출항에 운송되지 못해 다시 수출하지 아니한 경우, 해관은 기존 발급한 세금환급증명연의 신고서 데이터를 회수한다(이하 ‘취소된 신고서 데이터’).  **제10조** 각 지역의 세무기관은 선적항 세금환급 정책이 적용되는 수출화물에 대하여 ‘선적데이터’를 사용하여 세금환급(면제)를 심사하여 처리해야 한다.  **제11조** 수출세금환급의 심사관심정보 중 관심기업 등급이 1-3급으로 분류된 수출기업은 각 지역의 세무기관이 반드시 정상통관완료데이터를 사용하여 세금환급(면제)를 심사하며, 선적데이터를 사용하여 세금환급(면제)을 심사해서는 아니 된다.  **제12조** 각 지역의 세무기관은 선적항 세금환급(면제)의 점검업무를 강화해야 하고, 수출세금환급 심사시스템 중 해관이 제공한 “선적항표식”이 기록된 신고서 데이터에 근거하여 지체없이 점검데이터를 생성한다. 자동점검 비교대조를 거쳐 상이한 데이터에 대하여 아래의 원칙에 따라 수기처리를 진행한다.  (1) 선적데이터 중 수출의 수량 및 단위, 총가 등 항목이 정상통관완료 데이터와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 정상통관완료 데이터를 기준으로 기존의 세금환급(면제)액을 조정한다.  (2) 점검데이터 중 취소된 신고서 데이터 및 미도달데이터와 연관되는 경우, 현행 규정에 근거하여 기존의 세금환급(면제)액을 추징하거나 조정 및 처리하여 진행한다.  (3) 점검데이터 중 선적일로부터 2개월 내 통관완료 정산수속을 처리하지 않거나 정상통관완료 데이터를 수령하지 아니한 신고서 데이터(이하 ‘기한 경과 미통관완료 데이터’)와 관련, 현행 규정에 근거하여 기존의 세금환급(면제)액을 추징하거나 조정 및 처리를 진행하며 선적항 세금환급 정책을 다시 받지 아니 한다.  상술한 규정에 따라 기존에 처리하여 완결된 기한 경과 미통관완료 데이터에 대하여 해관이 재차 통관완료 정산 및 정상통관완료 데이터를 받은 경우, 수출기업은 선적지 해관이 발급한 세금환급증명연을 가지고 다시 세금환급을 신고하고 수출세금환급을 주관하는 세무기관은 정상통관완료 데이터에 의거하여 현행 규정에 따라 이를 심사하여 처리한다.  **제13조** 각 지역의 세무기관은 지체없이 점검결과를 수출기업에 피드백해야 하고, 수출기업으로 하여금 피드백정보에 의거하여 기존의 세금환급(면제)액을 보충납부하거나 차월 증치세 납세신고기한에 따라 신고데이터를 조정하도록 독촉해야 한다. 수출기업이 제때에 기존의 세금환급(면제)액을 보충납부하지 않거나 신고데이터를 조정하지 아니한 경우, 각 지역의 세무기관은 지체없이 이를 추징해야 한다.    **제5장 기 타**  **제14조** 화물이 수출항에 운송되지 않아 실제로 수출하지 않은 경우 수출기업은 현행 규정에 따라 세무기관에 <수출화물 반송 보충납부(세금미환급) 증명>을 신고하여 발급해야 하고, 수출기업이 세금환급(면제)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다시 세금환급(면제)을 신고할 수 없으며; 세금환급(면제)를 신고하여 처리한 경우 기존의 세금환급(면제)액을 보충납부해야 한다. 세무기관은 발급증명을 심사할 때, 해관에서 제공한 미도달데이터와 취소된 신고서 데이터를 비교대조하여 심사해야 한다.  **제15조** 증치세 면세정책을 실행하는 수출화물은 주관세무기관이 정상통관완료 데이터에 따라 심사하여 면세해야 한다.  **제16조** 각 지역의 세무기관은 정확하고 지체없이 선적항 세금환급을 처리해야 하고, 선적항 세금환급 유관업무의 일상적인 점검과 조기경고 평가업무를 강화한다.  첨부: 1. 선적항 세금환급(면제) 정책의 적용조건에 부합되는 운송기업 명단  <http://www.chinatax.gov.cn/n2226/n2271/n2272/c775173/part/775380.xls>  2. 선적항 세금환급(면제) 정책의 적용조건에 부합되는 운송수단 명단  <http://www.chinatax.gov.cn/n2226/n2271/n2272/c775173/part/775381.xls> |  | **关于发布《启运港退（免）税管理办法》的公告**  国家税务总局公告2014年第52号  根据《财政部、海关总署、国家税务总局关于扩大启运港退税政策试点范围的通知》（财税〔2014〕53号），现将调整后的《启运港退（免）税管理办法》予以公告，自2014年9月1日（以出口货物报关单〔出口退税专用〕上注明的出口日期为准）起开始执行。原《启运港退（免）税管理办法》（国家税务总局公告2012年第44号）同时废止。  　 特此公告。  国家税务总局  2014年8月28日  **启运港退（免）税管理办法**  **第一章 退（免）税备案**  **第一条** 出口企业适用启运港退（免）税政策须同时满足以下条件：  （一）已办理出口退（免）税资格认定开展自营出口货物的增值税一般纳税人；  （二）纳税信用等级被税务机关评为B级及以上，且不属于出口退税审核关注信息中关注企业级别为一至三级的出口企业。  　（三）海关实行B类及以上管理的出口企业（以海关提供的带“启运港标识”的出口货物报关单电子信息为准）。  **第二条** 出口企业启运港退（免）税备案方式为，出口企业申报退（免）税时，税务机关在出口退税审核系统中自动确认。税务机关在读入海关提供的带“启运港标识”的出口货物报关单电子信息时，出口退税审核系统自动在相关出口企业的“企业代码”库中置上“启运港退税”标志。  **第二章 运输企业和运输工具确定**  **第三条** 符合适用启运港退（免）税政策条件的运输企业及运输工具由其所在地的省级国家税务局会同当地财政、海关等部门认定。  **第四条** 省级国家税务局应在本公告发布后将认定的符合适用启运港退（免）税政策条件的运输企业及运输工具名单上报国家税务总局，之后本地区新增及调整的符合条件的运输企业及运输工具名单应在每年的6月底和12月底上报国家税务总局。由国家税务总局汇总发布。名单上报格式见附件。  **第三章 退（免）税申报**  **第五条** 出口企业自营出口适用启运港退（免）税政策的货物，凭启运地海关签发的出口货物报关单（出口退税专用）（以下称退税证明联）按现行出口货物劳务退（免）税规定向税务机关申报办理出口退（免）税。  **第六条** 出口企业申报启运港退（免）税时，应在申报的明细表的“退（免）税业务类型”栏内填写“QY”标识。外贸企业应使用单独关联号申报适用启运港退税政策的出口货物退税。  **第七条** 适用启运港退（免）税政策的出口货物其退税率执行时间以启运地海关签发的退税证明联上注明的“出口日期”为准。  **第八条** 出口企业其他申报出口退（免）税要求按现行规定执行。  **第四章 退（免）税审核**  **第九条** 各地税务机关应按照现行电子传输系统出口退税子系统的管理规定，及时下载并读入税务总局下发的海关加注“启运港标识”的报关单数据：  　（一）启运地海关签发退税证明联的报关单数据（以下称启运数据）。  　 （二）正常办理结关核销的报关单数据（以下称正常结关数据）。  　 （三）未实际到达离境港货物的报关单数据（以下称未到达数据）。  　 （四）货物未运抵离境港不再出口，海关收回已签发的退税证明联的报关单数据（以下称撤销报关单数据）。  **第十条** 各地税务机关对适用启运港退税政策的出口货物，应使用“启运数据”审核办理退（免）税。  **第十一条** 出口退税审核关注信息中关注企业级别列为一至三级的出口企业，各地税务机关必须使用正常结关数据审核办理退（免）税，不得使用启运数据审核办理退（免）税。  **第十二条** 各地税务机关应加强启运港退（免）税的复核工作，及时在出口退税审核系统中根据海关提供的加注“启运港标识”的报关单数据，生成复核数据。对自动复核比对异常的数据应按如下原则进行人工处理：  　 （一）对启运数据中的出口数量及单位、总价等项目与正常结关数据不一致的，以正常结关数据为准调整已退（免）税额。  　 （二）对复核数据中涉及撤销报关单数据和未到达数据的，根据现行规定追缴已（免）退税款或进行调整处理。  　 （三）对复核数据中涉及自启运日起2个月内未办理结关核销手续、未收到正常结关数据的报关单数据（以下称逾期未结关数据），根据现行规定追缴已退（免）税款或进行调整处理，不再享受启运港退税政策。  　 对按上述规定已处理完毕的逾期未结关数据，海关又结关核销、收到正常结关数据的，出口企业可凭启运地海关签发的退税证明联重新申报退税，主管出口退税的税务机关依据正常结关数据按现行规定予以审核办理。  **第十三条** 各地税务机关应及时将复核结果反馈出口企业，并督促出口企业依照反馈信息补缴已（免）退税款或在次月增值税纳税申报期调整申报数据。出口企业未按时补缴已退（免）税款或调整申报数据的，各地税务机关应及时予以追缴。    **第五章 其他**  **第十四条** 货物未运抵离境港不再实际出口的，出口企业应按照现行规定向税务机关申请出具《出口货物退运已补税（未退税）证明》，出口企业未申报退（免）税的，不得再申报退（免）税；已申报办理退（免）税的，应补缴已退（免）税款。税务机关在审核出具证明时，应审核比对海关提供的未到达数据和撤销报关单数据。  **第十五条** 实行增值税免税政策的出口货物，主管税务机关应按正常结关数据审核免税。  **第十六条** 各级税务机关应准确及时办理启运港退税，加强启运港退税有关业务的日常复核和预警评估工作。  　 附件：1.符合适用启运港退（免）税政策条件的运输企业名单  <http://www.chinatax.gov.cn/n2226/n2271/n2272/c775173/part/775380.xls>  2.符合适用启运港退（免）税政策条件的运输工具名单  <http://www.chinatax.gov.cn/n2226/n2271/n2272/c775173/part/775381.xls> |